

「2026년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AI를 활용한 제품개발 및 서비스 도입으로 소상공인만의 새로운 가치와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6월 1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 간단소개

- ①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소상공인이 AI를 활용하여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AI 활용모델부터 비즈니스 모델 구현(사업화 지원)까지 단계별 지원합니다.
- ② 얼마나 지원해주나요?
 -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은 사업화 자금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화자금은 정부지원금 80%, 자부담금 20%로 구성됩니다.
- ③ 어떻게 신청하나요?
 - 소상공인24 홈페이지(sbiz24.kr) → [지원사업조회 및 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 및 신청] → [2026년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사업] 검색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시스템 접수기간은 2026. 6. 12(금)부터 **7. 3(금) 16시까지**입니다.
- ④ 궁금한 점이 있어요!
 -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주관기관(p11, 문의처)으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모집공고를 먼저 확인해주시고 문의해주세요.
- ⑤ AI 활용모델 구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참여 소상공인이 직접 보유한 아이디어와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AI 활용모델을 기획·구체화하며, 전문 AI 멘토기업은 멘토링을 통해 AI 적용방안 검토와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
- ⑥ 시중 AI 솔루션을 활용해도 되나요?
 - 단순 구매·구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이 기획한 AI 활용모델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업개요

- (목적) 인력·자금 등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AI 도입·활용을 지원하여 경영 효율화 및 제품·서비스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도모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신청기간) 2026년 6월 12일(금) ~ **7월 3일(금) 16시까지**
 - (사업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접수 (www.sbiz24.kr)
 - (지원규모) AI 활용모델 구축 1,000개사 선정, 사업화 680개사 선정
 - (지원내용) 소상공인이 AI를 활용하여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AI 활용모델부터 비즈니스 모델 구현까지 전주기 지원**
 - (활용모델 구축) AI 멘토기업과 함께 역량 진단, 원포인트 지원부터 사업 고도화, 마케팅 등 **부문별 AI 활용계획* 수립까지 밀착 지원**
- * (예시) ① 사업별 워크플로우, KPI 정립 → ② 목적별 로드맵 수립(데이터 수집, AI 설계학습, 자동화고도화 영역 설정) → ③ AI 모델 선택(RAG, 파인튜닝, 맞춤형 에이전트 활용 등)
- (BM 구현) 사업장 내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AI를 활용해 상용 시제품 개발, 타겟 마케팅 등 **실제 비즈니스 적용까지 지원**

단계	STEP1 : AI 활용모델 구축	STEP2 : AI 비즈니스 모델 구현
목적	AI 기반 생산성 제고 방안 마련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창출
대상	(공모) 소상공인 1,000개사	(선정) 680개사 내외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용모델 구축 [1개월] 소상공인 트랙 : AI 역량 진단, 프롬프트 최적화 등 원포인트 컨설팅, AI 로드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모델 구현 (최대 4천만원) [3개월] AI 시스템 : 자동화 비용, AI 튜닝, 솔루션 등 AI 활용 체계 구축 비즈니스 적용 : 시제품 개발, 타겟 마케팅, 공정 최적화 등

2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 선정 후 프로그램 활동 시 공동대표 교차 참석 가능하며, 프로그램은 기업단위로 제공
 - ** 단, 발표평가 시 주대표자 참석 필수 ※ 공동대표 대참 불가

□ 신청제외 대상

-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2] 확인
-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
 - *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 ** 단, 추후 사업비 신청 시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
-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
 - * 단, 신청마감일까지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 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지원) 가능
- ④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 ⑤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휴폐업' 중인 경우
- ⑥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 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⑦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⑧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평가·선정 과정에서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탈락 또는 선정취소 될 수 있음

3 지원내용

1 STEP1 AI 활용모델 구축

- (전문 AI 멘토링 지원) 경영관리, 마케팅·디자인 등 **부문별 전문 AI 멘토(기업) 매칭**을 통해 **AI 활용 역량 강화** 및 **사업모델 구체화·고도화 지원**
 - 최적 프롬프트 설계 등 사업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원포인트 컨설팅**으로 소상공인의 **AI 활용 역량 강화**
 - 전문 AI 멘토기업(AI 스타트업 등)을 통해 '**AI 활용 진단 → 사업모델 개선 방향 도출 → AI 활용모델 설계·테스트**' 등 단계별 멘토링 제공

< 부문별 AI 지원(안) >

구분	경영관리	마케팅·디자인	업무자동화	사업 고도화	판로 등
내용	계약·사회계 검토, 나만의 경영관리 시스템	홍보 콘텐츠 제작, 마케팅 최적화 등	고객 응답 자동화, 자동 예약시스템 등	신제품, 신메뉴 및 서비스 고도화 등	AI 활용 소품물 제작, 재고관리 등
AI 툴	Chat GPT, Hootsuite, Motion, Klarify 등	Midjourney, 클로바엑스, 나노바나나 등	GPT-S, Gemini, 코파일럿, Make, Claude 등	Chat Gpt, 젠스파크, AI 스튜디오 등	GPT, Whisper, Claude 등

◆ 멘토링 예시

① AI 기술 내재화 및 도구 적용

- (맞춤형 AI 도구 제안) 소상공인 업종, 요건 분야별 맞춤 도구 선정
-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전수) 최적의 명령어 설계 방안 전수
- (프로세스 최적화 제안) 여러 AI 도구를 복합적으로 활용, 하나의 BM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맞춤형 AI 모델 설계 방안 제안

② 결과를 검증 및 사업화 지원

- (결과물 품질 최적화) AI 특유의 정형화된 표현, 오류를 필터링하고 소상공인 니즈에 부합하는 고도화된 디렉션 제공
- (실현 가능성 검증) AI 분석 결과와 실제 소상공인 운영 역량 간의 간극을 조정하여, '실전형 BM'으로 교정
- (사업화 지원) AI 결과물의 상업적 활용 가능 여부 검토 및 서비스 적용 지원
- (안전한 AX 지원) AI 결과물의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검토 및 소상공인 대상의 기본적인 AI 윤리·보안 가이드 준수 여부 확인

2 STEP2 AI 비즈니스 모델 구현

- (사업화 자금 지원)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680개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당 최대 4천만원 범위 내 차등지원
 - * 평가결과 및 사업계획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 차등 결정
-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80% 이하) + 신청기업 자부담금(20% 이상)

< 소상공인 자부담금(대응자금) 예시 >

구분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자부담금(대응자금)
비율	100%	총 사업비의 80% 이하	총 사업비의 20% 이상 (현금 또는 현물)
예시	4,000만원	3,200만원	800만원
	2,5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1,900만원	1,520만원	380만원

- (사업화자금 집행범위) 전문 AI 멘토와 협업하여 개발한 AI활용 모델 또는 시제품 등을 실제 사업 현장에 적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정부지원금 집행항목 >

집행항목	집행내역
제품·서비스 고도화	• AI 활용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 • AI 활용 시제품 제작 비용, 테스트 운영 비용
AI 활용 도입	• AI 솔루션 신규 도입, 기능 확장 또는 시스템 연계 비용 등
홍보비	• AI 콘텐츠 활용 광고비, 마케팅 집행비
전문가활용비	• 외부 전문가 및 전문가관 자문 지급수수료
재료구입비	• AI 활용 신제품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
수수료및사용료	• 산업재산권 취득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임차료	•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 장비 임차비

*세부적인 집행 기준 및 증빙방법 등은 사업비 지급 시 안내

< 자부담금(대응자금) 인정항목 >

집행항목	집행내역
인건비	• 소상공인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인건비
	• 직접 상사·지속적 업무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수
수수료및사용료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임차비	• 사업장 역할·기능을 하는 임차비(월세 등)

* 세부적인 자부담금(대응자금) 인정 기준 및 증빙방법 등은 사업비 지급 시 안내

◆ 집행 관련 주요 참고사항

- 사업비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
- 모든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 중 부가가치세(10%)는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음
-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은 카드매출전표(사업비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함
- 기재된 증빙자료 이외에 주관기관이 추가 서류 필요 시 요청 할 수 있음
-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음
-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하였던 기업과 외주 용역거래 불가
- * 협동조합원 간 자기거래 및 이해관계자 간 거래 금지 등
- 사업화자금은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해야하며, 목적 외로 사용 불가
- * 세부 지원항목, 집행제한 요건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전문 AI 멘토링 지원) 실전모델 설계 결과를 기반으로 AI활용 모델의 현장적용 및 사업화 실행을 위한 전문 AI 멘토링 제공

- 신제품·서비스 개발, 시제품 제작, 시장검증, 공정 최적화, 브랜딩 등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후속 멘토링 지원

3 전국 AI 비즈니스 경진대회

- (경진대회 운영) STEP1 AI 비즈니스 모델 구현 참여기업 중 우수성과를 창출한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전국 AI 비즈니스 경진대회 참여 기회 제공
 - * AI 활용 성과, 사업화 실적, 경영개선 효과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 및 전국 결선 운영
- (시상금 지급) 전국 AI 비즈니스 경진대회 수상 소상공인 및 전남 AI 멘토 대상 시상금 지급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년 6월 12일(금) ~ 7월 3일(금) 16시까지

*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문의 및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신청 완료하는 것을 권고

- (신청방법) 사전 온라인강의 수강 후 소상공인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전수강)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 AI학습관 내 온라인 강의 중 1개 과정 수강(수강 완료 후 소상공인24를 통한 사업 신청 가능)

* [참고4] 사전강의 온라인강의 수강방법 참고

- (사업신청)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접속(www.sbiz24.kr)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 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 및 신청

- (제출서류) 신청 시, 홈페이지 내에서 서류 작성 또는 제출

구분	제출서류명	비고
필수	1 사업신청서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작성
	2 사업계획서 (서식)	작성 후 첨부
	3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 시 해당 서류 생략 가능
	4 사업자등록증	*
	5 국세 납세증명서(개인, 법인)	단, 신청일 기준 서류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 마이데이터를 동의했다라도 소상공인확인서 등 데이터 확인 불가
	6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 법인)	**
	7 부가가치세표준증명(최근 3개년) * '23년, '24년, '25년	** 공공마이데이터 제공요구하지 않거나 미연동 시 직접 서류 발급 및 첨부 필요
해당시	8 [공동대표] 사업자등록증명원(공동대표 명사) 공동대표 확인서 (서식)	해당 시 관련 서류 별도 첨부
	9 [가점] 우대지원 요건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참고5)	

* 서류 확인 등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1) 제출서류는 신청접수 기간 내 (또는 보완기간 내) 유효한 경우 인정
- 2) 항목 당 최대 30MB까지 허용되므로 용량 초과 시 사진 등 압축하여 업로드 필요
- 3) 항목 당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zip파일(압축 등)로 업로드 필요
- 4) '공공마이데이터'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 시, 일부 서류는 자동 연동하여 제출되나, 신청일 기준 서류발급 이력이 없으면 공공마이데이터를 동의했다라도 데이터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단은 추가 증빙자료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 공공마이데이터 제공요구하지 않을 경우 직접 서류발급 및 첨부 필요
- 5) 법인기업(소상공인) 대표자의 국세·지방세납세 증명서(개인)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후 제출 안내 예정
 - 가정 서류 중 최대 가정 서류 1건만 인정 (중복 불가)
- 6) 필요시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항목

- ※ (개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 ※ (법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 ※ 소상공인24 서비스로 본인정보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항목은 위와 같으며, '2026년 혁신 소상공인 AI활용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에서는 제공항목 중 4종(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을 확인합니다.

- (중복참여 불가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또는 타부처 정부의 지원사업에서 이하 해당 사업은 동시에 수행 불가 (참고6)

5 선정절차

□ (평가방법) 요건검토 → 서류 → 발표평가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구분	① 요건검토	② 서류평가	③ 실전모델 설계	④ 발표평가
세부 내용	소상공인 여부 등 검토	혁신 소상공인 AI활용지원 대상자 선정 * 1,000개사	STEP1 AI 활용모델 구축 지원 (AI활용 진단, 사업모델 개선방향 도출 테스트 등)	STEP2 AI 비즈니스 모델 구현 소상공인 선정 * 680개사
선정 규모				사업화자금 최대 4천만원 * 정부지원금 80%, 자부담20%

① (요건검토) 1)서류 제출여부, 2)소상공인 여부, 3)지원제의 대상 해당 여부 등 신청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 확인

* 요건검토(소상공인, 업종, 사업자등록상태, 국제·지방세 체납 등)는 신청마감일부터 최종 선정 시까지 상시 진행하며,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② (서류평가) AI 활용 적합성, 성장가능성, 참여역량 등 평가항목에 따라 서류 평가를 실시하고 STEP1 AI 활용모델 구축 지원 대상자 1,000개사 선정

< 서류평가 항목(안) >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AI활용 적합성 (30)	• AI 활용 전략의 명확성 및 도입 필요성 • 사업 운영 프로세스 내 AI 적용 가능성 및 적합성	15점 15점
성장가능성 (40)	• AI 적용을 통한 사업모델 개선 가능성 • 시장성·경쟁력 및 지속 성장 가능성	20점 20점
참여역량 (30)	• 사업참여 의지 및 수행역량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15점 15점
합계 (가점 별도)		100점

③ (실전모델 설계) 선정된 1,0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AI멘토(기업)을 통해 멘토링을 지원하여 AI 활용모델 구체화 및 사업계획 고도화

④ (발표평가) 실전모델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AI 활용모델의 완성도, 사업고도화 가능성, 실행·사업화 역량 등을 심층 평가

8 유의사항

◆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사업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소상공인)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의 신청은 신청기업의 대표자(대표기업)가 하여야 하며, 소상공인24 상의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미제출 시 평가제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모방·표절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선정자는 동 공고문, 사업운영지침, 중소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주관기관의 안내 자료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비공식적인 경로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 신청기업 역량을 반영하여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7 문의처

□ 사업문의

• (온라인) 소상공인24 모집공고 페이지 하단 상담신청 버튼 클릭

• (유선) 권역별 주관기관 사업담당자

순번	권역	주관기관명	문의처
1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02-749-9573 02-739-9155 02-739-9799 02-6952-0021
2	강원권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033-248-7955
3	제주권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064-710-1911
4	충부권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044-999-3303 044-999-0004
5	전북권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063-632-2025
6	호남권 (전남, 광주)	주식회사 알파브라더스	070-4285-2205
7	대경권 (대구, 경북)	대구테크노파크	053-759-4191 053-819-1557
8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161 052-283-7164 070-4215-7116 055-716-1100

8 참고자료

- 【참고 1】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 【참고 2】 지원제의 업종
- 【참고 3】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참고 4】 사전 온라인교육 수강방법
- 【참고 5】 서류평가 가점 증명서류
- 【참고 6】 동시수행 제한 정부지원사업
- 【참고 7】 AI 사업화 주요 사례
- 【참고 8】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
- 【참고 9】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및 제공 동의서

참고 1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 사업기간 : '26. 7월 ~ 12월 * 추진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추진단계	추진내용	추진일정(안)
신청·접수	• 지원대상자(소상공인)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 sbiz24.or.kr	~ '26. 7. 3.
서류평가	• 서류평가	'26. 7월 중
평가결과 통보	• 서류평가 적합 소상공인(1,000개사)	'26. 7월 중
STEP1 AI활용모델 구축 지원	• 전문 AI 멘토기업 매칭(수요조사, 매칭 등) • 전문 AI 멘토링 지원 * AI활용모델 구축 지원 미참여 시, 발표평가 및 사업화자금 지원 불가	'26. 7 ~ 8월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26. 9월
STEP2 AI 비즈니스 모델 구현	• 사업화 대상자(소상공인) 680개사 선정 • 선정자 대상 사업화자금 최대 4천만원 지원 • 전문 AI 멘토링 지원	'26. 10 ~ 12월
전국 AI 비즈니스 경진대회	• 경진대회 권역별 예선 및 본선 진행 • 우수 소상공인 및 우수 모델 발굴	'26. 12월

참고 2 혁신 소상공인 AI활용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일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 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 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표준산업분류	업종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익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홍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단,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청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지원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참고 3 소상공인 확인 기준(매출액, 상시근로자)

□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 하는 기업
-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 하는 기업
-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적 없는 조합 지원제외)
-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비영리가 목적이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므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중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받은 경우 제외)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의 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분	매출액 확인서류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영)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반과세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 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 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종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②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③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중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 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4조(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에서 정한 다음 ①~⑥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 소상공인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⑥에 따라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기업을 포함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업이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경우 해당 기업은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를 철회할 수 없음))

[붙임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19. 금융 및 보험업	K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를 제조업(C3120)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업종구분 방법

업종구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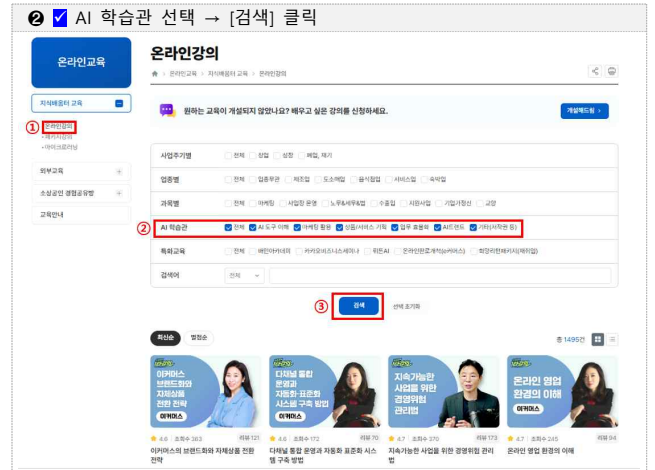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 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 예 :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증(명)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 해당 업종이 사업자등록증(명)의 업종(업태)에 없는 경우, 업종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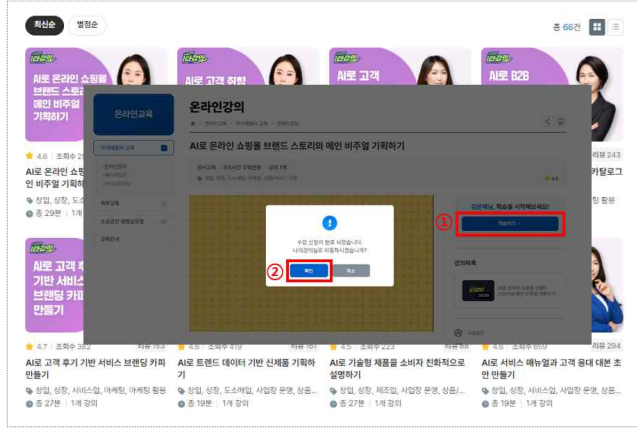
-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 * 예 :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텍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입 사실 확인서<서식8>'를 작성하여 제출

참고 4 사전 온라인교육 수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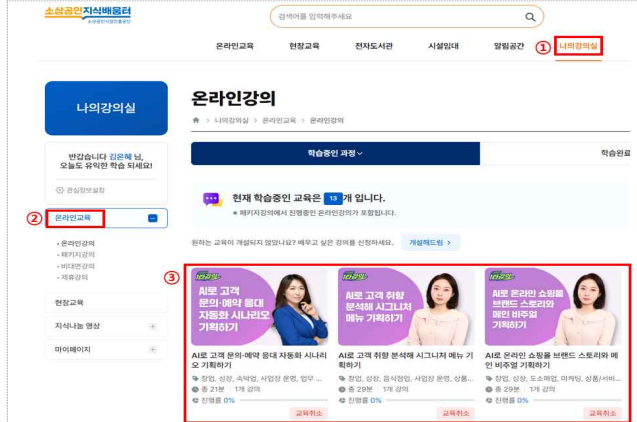
- (수강 방법)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에 게시된 “**AI학습관**” 카테고리 교육 중 희망하는 **1개 이상 과정** 신청 후 수강



3 AI 교육 콘텐츠 중 수강 희망하는 교육 1개 이상 선택 후 "학습하기"



4 [나의강의실] 클릭 → [온라인교육] 클릭 → 신청 과정별 학습



참고 5 서류평가 가점 증빙서류

구분	연계사업	가점	증빙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2점	- (자격)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창업기업(1기~18기) - (증빙)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증 * (1기~18기) 소상공인24(www.sbiz24.kr)-마이페이지-중명서발급신청-등록-기업가형소상공인확인서 발급
	'25년도 장인학교	2점	- (자격) '25년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장인학교트랙) 수혜자 중 공고게시일 기준 이전에 창업한 자 - (증빙) 장인학교 수료증 * 공단에서 발급한 장인학교 수료증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2점	- (자격) 개인협업·로컬브랜드·글로벌상권 사업 수혜자 - (증빙)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확인서 * 소상공인24(www.sbiz24.kr)-중명서발급-중명서발급신청-기업가형소상공인확인서 선택-발급신청클릭-중명서등록 탭에서 확인
	강한소상공인 성장	2점	- (자격)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수혜자 - (증빙)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확인서 * 소상공인24(www.sbiz24.kr)-중명서발급-중명서발급신청-기업가형소상공인확인서 선택-발급신청클릭-중명서등록 탭에서 확인
	지역발전특구	1점	- (자격) 공고 전년도 우수특구 내 소재하는 특화사업 관련 기업 중, 지자체 추천철차를 거쳐 우대대상으로 확정된 자 - (증빙) 중소기업기부부(특구운영과) 통보 공문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브랜드	1점	- (자격) 공단에서 인정한 정식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인증업체 - (증빙) 해당 공단 담당 사업부서를 통해 별도 확인 예정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입점지원	1점	- (자격) 최근 4년간 해당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22~25년) - (증빙)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체결한 입점 계약서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0.5점	- (관련지역) 해당 사업에 선정된 51개 지자체(18~25년) * '26년 신규 청년마을 선정지 10곳 포함(4월 중 최종 선정) - (자격) 해당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추진한 청년단체·기업의 대표 혹은 운영진(1년 이상 활동) 중에서 행정안전부의 확인을 받은 자(사람, 업체 포함) - (증빙) 청년마을명, 운영기간, 운영내용 및 역할 등이 포함된 확인서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	0.5점	- (관련지역) 해당 사업에 선정된 38개 지자체(23~25년) - (자격) 해당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자(사람, 업체 포함) - (증빙) 로컬브랜드 관련 사업명, 참여 기간, 참여내용 및 역할, 참여자 및 기업명 등이 포함되고 해당 지자체장 직인이 있는 추천서

참고 9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고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 제4호(계약 체결 및 이행)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혁신 소상공인 시활용지원 사업 운영·관리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대표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해당시) 공동대표자정보(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수집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제1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혁신 소상공인 시활용지원 사업 관련 공공기관 정책자료 활용 및 사후관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혁신 소상공인 시활용지원 사업 지원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